

KBIZ 중소기업중앙회

611-7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연산4동 586-7)중소기업중앙회 8층
T. 051) 861-9375 9365 / F. 051)711-7361
www.kbiz.or.kr

FACSIMILE

수신처 외국인근로자 고용 담당자	발신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팩스번호	팩스번호 051-711-7361
전화번호	전화번호 051-861-9375, 9365
발신일	총 매수 표지포함 5매

제 목 : 성실 외국인근로자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안내문 송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우리 지역본부 팩스(051-711-736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근로자(E-9) 도입절차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담당자께서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성실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1부
2. 위임장 1부
3. 성실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안내문. 끝.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_____ . 사업주성명 : _____
- 연락처 :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 (팩스) _____ (e-mail) _____ @ _____
- * 귀사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
- 소재지 : _____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칭 : 중소기업중앙회 . 연락처(전화번호) : 051-861-9375
- 대표자성명: 김 기 문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팩스번호) : 051-711-7361

“갑”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성실 재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119,000원	✓
		* 인도장소: 경인지역[] 대전지역[] 대구지역[]		

선택	각종 신청대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입국 전	86,000원	✓
		· 고용변동신고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등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3년) 입국 후		
			사업장 변경자	1,200원× 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 통·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 시	76,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100원× 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1,2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1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86,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마약 반응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변동신고가 가능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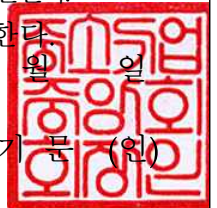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_____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 기 문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요망

【 위 입 장 】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합니다.

성 명(대 표 자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팩 스 번 호 :

【 행정대행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은 귀회가 본인에 대한 행정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 목 : 성명, 전화번호
2. 기 간 : 대행계약 체결일 ~ 종료일
3. 목 적 : 대행 서비스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제도 관련 안내 등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201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